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d Electronic Commerce

박복재(Bok-Jae, Park)*

요 약 (ABSTRACT)

Intercompany online businesses can offer digital information to each company, and yet without legal verification business activities are less efficient. Just one single country cannot control this problem with its own EC law and now international cooperations are being required. Currently, International Regularization is the main agenda amo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CITRAL, OECD and WTO and so on. Furthermore, most of the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SA and EU, announce their fundamental strategies for the multilateral regularization in their favor. At the present stage, South Korea's Electronic Commerce law and Digital Signature law went into effect as from July 1, 1999, indicating that they can strike the keynote of the systematic infrastructure for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is country.

Key Word : EC, EDI, CALS

<목	차>
I. 서론	3. 전자서명법 4.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계
II. 해외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1. 개관 2.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3. 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IV.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및 입법상의 문제 1.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2. 전자상거래 관련법 입법상의 문제
III.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실정법 현황 및 문제점 2. 전자거래기본법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인터넷 사용의 비약적인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 여수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electronic commerce : EC)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를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새로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정의는 전문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팡의 정의는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 EFT), 신용카드·직불거래 등과 같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 및 상거래를 말한다. 협의의 정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 네트워크상에서 거래와 대금 지불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의 소매상거래만으로 제한하기도 한다.¹⁾ 한편 우리 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규정(동법 2조4호)하여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를 매개로 한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총전의 전자상거래는 서로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거래 당사자들간에 폐쇄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대 기업간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국가 법제의 상위에 따른 적법·유효성의 문제에서부터 법의 저촉, 거래안전의 보호, 국가주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청약, 승낙, 계약성립의 시기·장소 등에 관한 문제 및 전자서류의 방식 요건에 관한 문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따르는 통관, 조세, 거래이행에서의 분규 및 소비자 보호, 통신보안 및 대금결제, 자금이체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전자상거래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조가 요청되므로 국제 규범화 작업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및 OECD, WTO³⁾ 등 국제기구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제정을 위하여 저마다 기본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근간이 될 것으로

- 1) 전자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미 존재해 온 전자상거래 형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매일 몇조불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는 등장한지 이제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거래량도 미미한 상태이다.
- 2) 본고에서는 무역, 즉 상거래에 주목하기 때문에 정부행정 서비스의 전자적 이용 등 비영리적인 거래를 포함하는 「전자거래」 대신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 1998년 9월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전자상거래는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라운드, 즉 인터넷 라운드 혹은 사이버 라운드로 거론되고 있다.

보이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법들이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에 비해서 학계 및 기업에서 실제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인 연구 및 대응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 법의 시행 후 발생하게 될 많은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들에 대비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및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개관 및 법률 문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시행의 효과 및 입법상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해외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1. 개관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다. UNCITRAL은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는 등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Article 4A)을 두고, 연방법인 전자자금이체법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규정(regulation E)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1997년 멀티미디어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밖의 국제기구 및 단체들도 각국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고 있다. ICC가 1988년에 제정한 무역정보의 전송교환에 관한 통일규칙(UNCID ; ICC Publication No.452)은 EDI 이용자간에 보안, 송신자의 식별, 수신자의 입증, 내용의 확인, 암호화, 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거래관행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는 1996년 디지털 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디지털 서명 및 공개키 하부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 특색이다.

ICC는 1995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국제인증에 관한 통일관행(Uniform International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Practice ; UIACP)의 정립을 모색한 데 이어 1997년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념의 정리 및 바람직한 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한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GUIDEC)를 제정·공표하였다.

1997년 7월 미국이 제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⁴⁾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국제거래의 규범을 정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New Round)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2.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1) UNCITRAL 모델법

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UNCITRAL은 1996년 제 29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고 동년 제 85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UNCITRAL 모델법은 그 성격상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범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모델법의 제정 취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 원칙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명이 된 원본서류가 아닌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의 특징은 조약법(convention)이 아니고 각국이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신기술을 규율할 수 있고, 향후 기술적인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통신기술도 그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정된 것이다.

특히 모델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든 규칙과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법은 전통적인 문서를 전제로 한 법률 요건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가정 하에 종이 문서의 가독성, 보존성, 진정성, 증거력 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전자 메시지도 종이 문서와 같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전자자금이체 모델법

UNCITRAL에서 1986년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입법지침」(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을 작성한 데 이어 1992년 5월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채택하였다.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UCC 제4A편의 기본 개념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

현재 UNCITRAL은 각국에 모델법을 바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이를 지침으로 채택하였고 그 밖의 나라들은 민·상법 등

4) http://www.iitf.nist.gov/electronic_commerce.htm

기존 법 체제하에서 하부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⁵⁾

다. 전자서명통일규칙

1997년 UNCITRAL 제 3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서명(digital/electronic signature) 및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도왔다.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물건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⁶⁾

UNCITRAL은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에 관한 국제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특히 인증 절차의 적용가능성, 사용자·인증기관·제3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록(registries)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에서는 현재 ICC의 GUIDEC과 ABA의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토의를 진행중인데, 통일규칙의 기본 골격은 갖추어졌고 해결을 요하는 쟁점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한승철, 1998)

(2) ICC가이드라인

가. 의의

ICC는 전자상거래와 인증기관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GUIDEC)을 제정하였다(ICC, 1997, 대한상공회의소, 1998). GUIDEC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모아 용어의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공개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다른 법적 전통을 조화시키기 위해 대륙법과 영미법의 처리내용을 함께 소개한 것이 특색이다.

GUIDEC은 서로 다른 법제 하에서 현행법 및 관행상으로 디지털 메시지를 어떻게 보장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의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위험과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서명자, 인증기관 및 이에 의존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GUIDEC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안전성(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상거래의 보장 및 인증에 관한 관행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GUIDEC이 제시하는 보장은 특수한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부인금지(non-repudiation), 메시지의 무결성(message integrity), 검증(verification) 등 보안성의 이점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인프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나. 각국의 법제 비교

5) 우리 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추진하였던 전자자금이체법(안)은 관련 금융기관들이 약관의 형식으로 이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입법이 보류되었다.

6) http://www.un.or.at/uncitral/sessionss/wg_ec/wp-71.htm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법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거래에 있어서 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요구해 온 원칙 내지 관행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중요한 계약은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륙법 국가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반드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은 영미법, 대륙법을 막론하고 현행 법규에 저촉될 수 있다. 즉 전자 메시지가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GUIDEC은 국제거래에서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전자메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1990)

전자식 선하증권 실현의 구상으로서 1990년 국제해법회(CMI)에서 채택된 ① 해상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 규칙, ②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 통일 규칙, ③ 1996년 6월의 UNCITRAL의 EDI 모델법 제 2편 물품운송 조항이 있다.

전자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운송인이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인과 송하인(매도인) 혹은 양수인(매수인 혹은 전매인)이 서로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운송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의 이전과 운송품의 인도를 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CMI는 1990년 6월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교환을 하는 당사자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통신을 행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적 규약으로서 상술한 UN/EDIFACT와 1987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UNCID(the 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 원격전송에 의해 거래데이터교환을 위한 통일행위규범)의 두가지가 있다.(박복재, 1994)

3. 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1) 미국

미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

7) 개인키(private key)란 전송의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integrity)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숫자 또는 문자를 조합시킨 암호번호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 통일규칙 제 2조 f항) 또한 소지인(holder)마다 별개의 개인키가 주어지지만 소지인은 개인키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동규칙 제 8조 a항)

기·전자적 수단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 기준 및 보안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 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거래내역의 서면통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한 연방법이다.

한편 미국의 각주는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서명 내지 전자통신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그의 인증, 보안, 부인금지,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모델이 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은 세계 최초(1996. 8)의 전자서명에 관한 체계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유타 주가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40여개 주가 약간씩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자서명법을 마련하였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전자서명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국 UCC를 기초한 「통일주법위원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 NCCUSL)와 미국법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에서는 최근 컴퓨터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를 UCC 제 2B편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NCCUSL에서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⁸⁾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증진을 추진하고, 인터넷상에서도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2) EU의 입법동향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은 나라별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EU 또는 OECD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개별적인 입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EU 전체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⁹⁾

영국 통상산업부에서는 1997년 3월 암호기술과 인증기관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입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은 1997년 8월 1일자로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기반구조를 정하는 법률」¹⁰⁾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멀티미디어에 관한 주요 문제 및 멀티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8) <http://www.ali.org/ali/pr040799.htm>

9) <http://cwis.kub.nl/~frw/people/hof/DS-lawsu.htm>

10) <http://www.iid.de/rahmen/iukdgebt.html#a3>

이 법의 디지털 서명제도는 이른바 공개키(public key)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즉 수학적 암호키와 사인키(signature key)를 사용자(user)가 신청하면 공인된 인증기관은 이를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여기서 인증기관이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공개키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확인 증명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법은 사인키의 인증 업무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민간에 위임하였다.

Ⅲ.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실정법 현황 및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 90년대 들어 「무역업무자동화촉진 관한 법률」(91. 12. 31제정 92. 7. 1 시행),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94. 12. 22 전면개정. 95. 7. 1 시행), 「화물유통촉진법」(91, 12, 14 제정.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근거규정 마련), 「전산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86. 5. 12 제정 95. 8. 4 전자문서의 근거규정 마련), 「정보화촉진기본법」(95. 8. 4 제정, 96. 1. 1 시행) 등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1)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이고 최초의 입법례로서 법률 제4479호로 제정되었다. 그 제정목적은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법 제 2조 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작성명의인 표시와 그 인증 효과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8호) 따라서 전자문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래의 문서에서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과 같이 전자서명을 반드시 해야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자 등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서명은 무역관련 법령 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전자문서상에 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법 제 14조). 이 규정은 전자문서에 있어서 문서상의 명의인 문제 등 인증 효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은 종래의 문서에서 서명·날인을 한 효과와 똑같이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2) 상법에서 상업장부, 서류 등 서명제도 도입

19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상법의 개정 내용에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전자상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상업장부 기타 상거래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설정하여, 앞으로 상업적인 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종래의 상법 규정은 반드시 장부작성자 명의인 표시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제30조 2항). 즉, 종이류에 의한 문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기명날인 대신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서명을 추가하였다(법 제30조). 전자서명의 경우도 해당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는 기명날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하다.

(3)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4824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백히 하고,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 법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라 함은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화 한 상업적인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5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에 있다.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전자문서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3항).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2항). 이와 같이 전자문서에 표시된 전자서명은 기존의 일반문서에 명의인으로 표시된 직인 등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5) 실정법의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 위의 개별 법을 잇달아 제정·시행해 왔으나 이들 법률은 공법적인 차원에서 사업자의 육성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EDI관련 규정도 공공부분간의 업무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부분간의 EDI와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특히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무역관련업체와 은행 관공서를 연결하는 EDI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거래약정(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교환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EDI와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에 있어서는 이러한 약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전자상거래 전자서명에 관하여 체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하여, 유엔, ICC 등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모델법과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1998년 「전자거래기본법」(1999. 2. 8 공포)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2.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 개관

가. 입법취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서면 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보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나. 주요골자

㉠ 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3조)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2조1호)하므로 한 마디로 말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만큼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한 이 법의 일부규정(9-12조)은 원칙적으로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4조)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5, 6 조)

거래상의 의사표시 및 도달시기로 간주되는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기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자문서는 작성자(또는 그의 대리인)와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송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그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본다.(9조1, 2항)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통지받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가 아니면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10조)

㉔ 개인정보보호

전자거래 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13조2항) 하고 있다.

㉕ 공인인증기관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16조 및 17조) 하고 있다.

㉖ 전자거래의 촉진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19조 내지 21조) 하고 있다.

㉗ 전자거래진흥원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의 조사연구 등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22조, 부칙2조)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28조) 하고 있다.

㉘ 소비자보호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29조 내지 32조) 하고 있다.

(2)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종합 의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반부에서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후반부에 있어서는 전자거래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기반조성과 전자거래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거래를 감안하여 UN에서 작성한 모델법의 규정을 고려하는 것은 전자거래의 특성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체계는 우리 법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륙법체계와 상이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안의 검토시에 우리 법의 체계 내에서 모델법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가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단편적으로 존재하였던 개별 법령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적용범위의 규정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전자거래 혹은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거래기본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자서명법

(1) 전자서명법 개관

가. 입법 취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공인 인증기관(CA)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오래 전부터 요청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보게 된 것이다.

나. 주요 골자

㉠ 적용 범위

이 법은 위에서 설명한 전자거래기본법과 나란히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전자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범위를 좁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기본법 2조5호)고 규정한 반면,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비밀키)로 생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말한다”(2조 2호)고 하여 그 범위를 이른바 디지털 서명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요하므로(기본법 6, 16조) 결국 전자서명법과 그 의미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다.

㉡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3조) 하고 있다.

전자서명을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

의 효력을 규정한 전자서명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 등”이라 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확보되고 문서의 증거력이 보장된다.

㉔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증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규정(4조, 5조) 하고 있다.

㉕ 인증 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관리제도

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증 실무준칙의 신고, 인증기관의 업무 휴·폐지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6조 내지 10조) 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취소, 업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12조, 14조) 하고 있다.

㉖ 인증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발급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발급·효력정지·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15조 내지 18조) 하고 있다.

㉗ 인증업무 수행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의 제한,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24조, 32조 내지 34조)함을 규정하고 있다.

㉘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 인정

전자거래의 범세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국제협정에 의하여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27조) 하고 있다.

㉙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인증서 변조방지대책 강구, 안전·신뢰성있는 인증관리체계 운영, 전자서명키의 안전한 관리, 인증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 등 의무를 규정(19조, 21조 및 22조)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법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배상하도록(26조) 하고 있다.

㉚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보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타인의 전자서명키 도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23조, 31조 및 32조)을 규정하고 있다.

㉛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설립·운영

전자서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과 인증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에 대한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의 운영(25조)을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서명법에 대한 종합의견

첫째, 전자상거래의 기초가 되는 서명과 인증의 문제도 Borderless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이 국가의 정보기반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적절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셋째,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제도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 상 보장된 개인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

(1) 법 적용대상의 관계

우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주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다는 점(제1조)이고,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양 법이 전자문서라든지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를 같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같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의 용어 정의 중 제1호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상의 전자문서의 개념과 같이 정의하면서도, 동법 제5호에서는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제5호)고 함으로써, 디지털 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보고 있는 전자서명법과는 달리 그 범위를 모든 형태의 전자적 서명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주목적이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두고 있는 반면 전자서명법은 안전한 또는 고급의 전자서명 제도의 정착에 두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이 디지털서명을 법의 주된 인식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적 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적 부문에 더 큰 적용의 범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 등 공공기관 상호간의 전자문서의 거래라든지 국민과 공공기관간의 EDI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술적 기반구조의 법제적 틀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그 한 당사자로 되는 법률관계는 그 요건이나 효력의 면에서 명확하여야 하는바, 전자문서를 통한 법률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종이문서에 행하여졌던 인감인에 의한 서명 날인의 방식에 일반 사문서의 그것보다 더한 진정성과 무결성을 입증하여

주는 각종의 증명 행위 등에는 인감 이상의 신원확인과 내용확인 및 행위확인 등의 기능을 가지는 전자서명을 특히 확정하여 이를 디지털서명으로 하는 것은 국가행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더하여 요구되는 것이 그 디지털 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신뢰성을 공인 받은 제3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서명을 디지털서명으로 보는 한 그러한 디지털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전자서명법이며, 그 외의 전자서명의 경우는 전자거래기본법 기타 관계되는 개별법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장의 제5조에서도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전자서명법은 전자적 서명의 여러 형태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의 결함이나 흠결이라기 보다는 전자서명에 관한 법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인인증기관의 관계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동법 제16조(공인인증기관)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의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지정되어 운용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권자로 규정한 ‘정부’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도, 전자서명법은 제4조 제3항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실체적인 자격요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 법의 동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공인인증기관의 관리)에서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 제2항에서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만 하여 기타의 전자서명에 관련하여 수행하여야만 하는 공인인증기관의 업무 등에 관해서는 전자서명법의 여러 조항에서 각 부문 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전자서명법 제4조는 그 제2항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고 하여 명백히 공인인증기관이 사적인 민간부문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전자서명에 관하여서는 전자서명법이 민간부문은 물론이거니와 공적 부문에 있어서도 일반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비록 전자문서에 고유한 전자서명을 디지털 서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더욱 더 당연하다. 그리 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인증기관”이라 함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이 조항은 공인인증기관에 관해서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전자서명법에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 한 일반 인증기관의 경우는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디지털 서명의 방식으로 인증업무를 행하는 것은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말하는 그 외의 모든 전자적 서명에 대해서도 이를 인증업무의 영역 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및 입법상의 문제

1.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1) 사법상의 문제

가. 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 메시지의 송·수신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내지 계약의 체결시기를 확정하고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계약의 성립시기를 송낙의 발신주의로 할 것인지, 송낙의 도달주의로 할 것인지는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송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송낙의 메시지가 상대방이 지정하였거나 그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계약이 성립(9조2항)하게 된다. 만일 수신확인통지가 송낙자에게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전자 메시지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12조 2항)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송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전자 메시지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도록(12조 3항)하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 및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송낙의 효력발생지를 계약의 성립지로 보게 되는데, 전자 메시지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한 것으로 본다(9조 3항). 영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자상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해당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으면 주된 영업장소재지에서 각각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9조 3항).

나. 의사표시의 하자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자를 가장하여 작성자가 전자문서로서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작성자가 이를 송신한 것으로 보지만,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통지 받았거나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10조).

(2) 공법상의 문제

가. 전자상거래의 안전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에게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운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 있다.

나. 소비자의 보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 전자거래당사자와 사이버 몰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 보호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3) 기타 법률 문제

법률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넘어 행하여지는 만큼 관련국가 법제의 상위에 따른 적법·유효성의 문제에서부터 법의 저촉, 거래안전의 보호, 국가주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따르는 통관, 조세, 거래이행에서의 분류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다.

조만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New Rounds)이 개시될 전망이다.

2.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입법상 문제

(1)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상의 문제

가.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제도 용어의 법적 정의나 적용범위가 모호해 차친 전자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거래”의 개념에 대하여 명백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4호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상거래가 아닌 부분까지 모두 거래로 규정할 수 있는 무리를 범할 수 있다.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도 단지 상거래¹¹⁾에 국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도 「거래」를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주고 받는 행위로서 계약 및 단독행위를 포괄하는 법률사실이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계약」 대신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자거래에는 계약뿐 아니라 취소, 해지와 같은 단독행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이나 공탁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포함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규제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 법의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돼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MP3파일(문서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등 기존의 개념이나 통상인의 판단에 비추어 문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개방된 범위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기본법에서 전자문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모든 정보를 뜻한다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같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EDI에 사용되는 표준화, 정형화된 전자문서뿐 아니라 비표준화, 비정형화된 정보도 포함되며, 이번 기본법 제정도 이러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P3파일이 단순히 노래가 담겨 있는 파일이라면 전자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자상품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실체법적으로 혹은 절차법적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법이 가지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전달수단으로서 전자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개방된 범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1) 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모델법 제1조 각주 4의 “commercial”의 정의 : “여기서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는 계약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상업적 성질을 가진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업적 성질을 가진 관계란 예컨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 배분계약, 상사대리 또는 대표, 팩토킹, 리스, 건축계약,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선싱, 투자, 금융, बैं킹, 보험, 개발계약 또는 면허권, 합작투자, 및 다른 유형의 산업 또는 회사, 항공, 해상 육상 또는 철로에 의한 물품 및 여객의 운송계약 등을 포함한다.”가 참고가 될 수 있다.

㉔ 전자문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혹은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¹²⁾

이 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문서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해 민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법체계가 대부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도 전자문서가 효력을 갖는 시점을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으로 보는 도달주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추세를 보나 현실적인 면을 보더라도 전자문서가 작성만 되고 송수신이나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 기본법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 즉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의 관계규정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 법에서 상충되는 규정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법의 제9조에 의할 때, LAN에 의하여 거래가 되는 경우라면 언제 송·수신이 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작성자와 수신자의 컴퓨터 사이에 한 대의 컴퓨터만이 있고 그 메일 서버를 작성자가 관리하는 경우라면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또한 메일 서버의 경우에 수신자에게 입력이 된 때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신자가 확인하지 않는 한 메일 서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송신자는 그 메일 서버를 통하여 수신된 전자문서를 삭제할 수 있게 되어서, 만약 전자문서 계약에서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청약이 도달하였음에도 특별한 유보규정 없이도 그 청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민법 제 527조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과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백한 규율을 하거나, 혹은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제9조 3항도 모델법 제15조 4항을 모범으로 규정한 것인데, 모델법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상업적 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송·수신 장소는 영업장이 있는 경우는 영업자의 소재지이고, 영업장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된 거주지가 그 장소가 된다. 만약에 “영업장”이라는 용어를 “영업을 위한 장소”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제9조 3항 본문은 대상인 “거래”가 상업상의 거래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모델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델법과 구별되는 우리 법의 특유사항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전자문서에 대한 기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전

12) 이러한 규정형식은 UNCITRAL 모델법 제2조(a)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1호에서도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자문서”의 개념은 다른 법률보다 더 우선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공통적이고 또한 통일적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관련법 규정¹³⁾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 중 민간인의 암호제품 사용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의 경우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에 대한 접근과 「암호기술」에 대한 접근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법의 제18조(암호제품)는 “전자거래” 일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법 2조 및 3조의 해석 상 사적 거래뿐만 아니라 공적인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 바, 이 경우에 양자를 동일하게 규율할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즉 암호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양자간에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1항은 “암호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암호에 있어서는 암호화 기술이나 암호화 서비스 등도 존재하고 이들을 “암호제품”이라는 용어 안에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 인지는 의문이다.

(2) 전자서명법의 입법상의 문제

전자서명법이 주로 상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기존의 민법, 상법 체계와 조화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모호해 법리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가. 이 법의 제2조 2호에서 전자서명의 정의에 대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기술표준이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은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만을 말하며, 다른 서명의 형식은 전자서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문제가 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다. UNCITRAL 모델법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형식을 3단계¹⁴⁾로 나누어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이나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식의 전자서명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법의 전자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표 4-1 참조>

13)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2조 7호, 화물유통촉진법 2조 11호,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안 2조 3호, 전자서명법 2조 1호 등의 정의.

14)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는 안전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서명의 추정, 귀속의 추정, 무결성의 추정이 있다.

<표 4 -1> 전자서명에 관련하여 인정되는 추정효에 관한 법제

항목	유타주 디지털 서명법	독일 디지털 서명법	UNCITRAL 모델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서명을 주 대상으로 함 - 매우 자세한 관련 정의 (4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서명을 주 대상으로 함 - 관련 정의에는 인증기관, 인증서 및 시접증명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 전자서명 및 안전한 전자서명의 정의 - 다른 정의는 각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다룸 - 디지털서명 - 추정 규정
법적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규정 - 디지털서명의 요건 규정 - 메시지/문서의 효력도 포함 - 원본 인정 - 추정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항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 인정명의 정의 - 추정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신뢰한도 지정 및 면책사유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

나.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점, 인증서 효력, 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소재, 정보보호센터의 관련부처에 대한 관리감독, 해외 공인인증기관 및 비 공인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서명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실질서비스를 제공한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 기관을 심사할 인증관리센터의 준비작업이 미비해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는 전자서명법 발효 후 수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 전자서명법 제16조의 경우 인증서 효력의 소멸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 인증기관이 폐지 신청 받은 시기와 효력정지 시기 사이의 간극이 클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마. 기존 민사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관련, 전자서명법에도 시점확인제도의 효력이 명시돼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바. 26조의 배상책임 규정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도 명시했는지,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된다면 입증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과실책임규정인지, 무과실 책임규정인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손해 발생시 분쟁이 예상된다.

사. 초기 인증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공인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0억 원, 50여억원의 시설투자, 20여명의 전문인력 등 엄격한 자격을 규정한 것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본 연구는 해외 및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조사하여 국내외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법률 관계를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등과 비교 분석하고, 이들 시행의 효과 및 입법상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법제도의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

1.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모범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정부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 등은 너무 피상적이다. 또 표준 사용료를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전자상거래가 방문 판매법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이 누리는 세계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라미드나 통판업체들에 준하는 엄격한 행정규제만 받는 것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 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 주체간의 거래 성립에 필요한 디지털 서명을 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제도적인 환경을 정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문제 발생시 배상책임과 한계를 놓고 분명한 명시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 또 행자부나 금결원, 그리고 민간인증기관간 인증업무의 차별성과 업무준칙 등이 아직 역할분담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전자서명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양 법간의 중복성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와 17조는 전자서명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 및 서명의 법적 효력, 개인정보보호 등의 상당부분에서 양 법이 중복된 조항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4. 전자상거래 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 연계 논의되고 있고 이 중 「전자자금이체법」이 전자상거래법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결국 거래는

자금의 흐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자금이체법」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입법목적에 갖고 있는 법안들은 상당부분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자금이체법의 경우처럼 재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 체제상 대통령령에 의한 독립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국가 차원의 학리적인 정보 체제의 조기구축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6. 전자상거래 및 정보이용활성화의 밑바탕이 되는 전자문서의 이용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이용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조달 분야에서부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공공 행정업무 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7.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정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 등 부적절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법적 기반 위에서 정보인프라의 구축·정비 등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KITA, 1997)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전자상거래법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원칙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통일규범의 마련 등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제 동향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를 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 중에서 민법이나 상법에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상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정부, 법률가 및 무역 관계당사자, 컴퓨터 기술자 등의 더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논문은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MOST·KOSEF) 지정 지역협력연구센터인 여수대학교 설비자동화 및 정보시스템 연구개발센터(RRC)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일반관계], 1998. 4.
박복재, "EDI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3권 3호, 한국무역학회, 1998. 12. pp. 195-232.
박복재, "선하증권의 EDI화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2호, 한국무역학회, 1994. 9. pp. 537 -562.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전자상거래와 법적 대응방안", 1998. 9.
한국무역협회(KITA),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방향", 1997. 10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1권 1호, 한국법학원, 1998. 3. p. 29.

2. 외국문헌

- ICC, 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1997.
White House, "A Framework fo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 1997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3. 관련법규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CMI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미국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

4. 기타

- http://www.iitf.nist.gov/electronic__commerce.htm
http://www.un.or.at/uncitral/sessionss/wg_ec/wp-71.htm
<http://www.ali.org/ali/pr040799.htm>
<http://cwis.kub.nl/~frw/people/hof/DS-lawsu.htm>
<http://www.iid.de/rahmen/iukdgeb.html#a3>